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327
----------	------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의결(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실장 윤종장)

#### 1.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및 시행('26.3.27.)에 앞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돌봄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1조~제3조)
- 시장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의무(안 제4조)
- 통합지원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정(안 제12조~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연번	의견 내용	반영 계획
1	제2조(정의)제2항에 다 항목 추가 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반영</li><li>- 조례안 제2조(정의)제2호 다 항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는 이에 포함됨</li></ul>
2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1항에 문구 추가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이하생략) ②~⑤(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반영</li><li>- 법 시행령안 제5조(종합판정 등)은 “대상자의 노쇠, 장애의 정도 등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능력,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로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안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제3항은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 제공기관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통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함</li></ul>
3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3항 신설 ③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시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8. 7. ~ 8. 27.) 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서울특별시 약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협의체의 구성)에 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참여 명문화</li> <li>◦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1항 제1호에 “방문 진료간호” 뒤에 “약물관리” 또는 “약물관리(복약지도 등)” 명시</li> <li>◦ 조례 전반의 “의료”를 “보건의료”로 통일</li> <li>◦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1항에 퇴원환자 장애인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지원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4항 각 호에 해당될 수 있음</li> </ul> </li> <li>◦ 일부반영 : “복약지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보건의료)에 복약지도가 규정되어 있음</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전반의 내용은 돌봄통합지원법과 일관성있게 규정함</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 제5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포함</li> </ul> </li> </ul>
민주노총 공공운수조 서울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 권리성 명문화 “~서울시민의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li> <li>◦ 제2조(정의) “연령·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서울시민”으로 대상자 보편화</li> <li>◦ 제7조(협의체의 구성)에 노동자 대표 및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기족 대표 참여 보장</li> <li>◦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공공 직접 제공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역할 명시</li> <li>◦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포함 및 종사자 권익보호 명시</li> <li>◦ 제○조(서울시 돌봄기금 설치) 조항 신설 요구</li> <li>◦ 제○조(지역케어회의) 조항 신설을 통한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li> <li>◦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결과 반영 강행규정 및 결과 공개나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의 제정이유와 목적에 맞게 기술한 것임</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령안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는 1. 65세 이상의 자 2.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4항 각 호에 해당될 수 있음</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민간의 돌봄서비스 품질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하고자 함</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기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편, 우리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정하고 있음</li> </ul> </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돌봄기금 설치는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장기 검토가 필요함</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따라 자치구에서 정하는 조례로 “통합지원회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li> </ul> </li>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규칙안 제6조(지역계획 추진성과 보고 및 평가 등)는 임의규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및 시행령안 제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li> </ul> </li> </ul> </li> </ul>
서울연구원 약자동행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제2항 중 가의 노인 연령기준에서 노인등으로 수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시행령안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음</li> </ul> </li> </ul>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제정안의 제안 개요

-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약칭)이라 함)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임
  -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제정됨
-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통합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조례제정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2조(정의)	제9조(위원회의 해촉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11조(협의체의 회의)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부 칙

##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1조~제3조)

-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정의하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함.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유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을 조례안에 반영함.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제 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지님.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로 건강하지 못한 노후 및 노인 부양의식 변화에 사회적 돌봄 요구가 증가에 따라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1개 광역, 기초 자체에서 발의 시행되고 있음.
  - 조례제정 광역 지자체: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조례제정 서울시 기초지자체: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도봉구, 중랑구
-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또한 법률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돌봄통합지원법 주요내용]

### ○ 정 의(제2조) : 통합 대상자 및 지원

- (대상자)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통합지원)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

### ○ 절 차(제10조~제14조) : 신청·발굴,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 (신청·발굴) 대상자, 가족 및 업무담당자 등은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신청 가능, 구청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직권 신청 가능
-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
- (통합지원 제공) 구청장은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

### ○ 지원정책(제15조~제18조) : 보건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 (보건의료)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구강관리, 복약지도 등
- (건강관리)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예방·완화
- (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노인성질환예방 등
- (일상생활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보조기기, 주거지원, 시설·기관 통원 등

### ○ 기반조성(제20조, 제21조) : 통합지원협의체, 전담조직 설치·운영

- (통합지원협의체) 시장·구청장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둠
- (전담조직 설치·운영)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음

## 나. 통합지원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24년 9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돌봄통합 지원센터 설치·운영안을 포함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수립계획을 발표함.
  -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의 5대 분야 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예정임.
  - ’26년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6,435백만원(국비 2,923백만 원) 편성 예정이며, 향후 국비지원액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돌봄통합 제공서비스]

① 보건의료	② 건 강	③ 요 양	④ 돌 봄	⑤ 주 거
① 방문진료 ② 퇴원환자지원	① 신체돌봄 ② 마음돌봄	① 장기요양보험 ② 기타 시범사업	① 긴급돌봄 ② 일상돌봄	① 환경개선 ② 주택지원

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제6조~제11조는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기구인 ‘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전반의 목적(통합돌봄 기반 조성 및 관계기관 간 연계 · 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등과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서비스별 개별 신청으로 복합적 요구 발생 시에도 시민이 서비스별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정보 접근의 한계로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 함.

## [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지원기관, 서비스제공 형태]

서비스 유형	신청/접수	판정/조사	선정절차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수행기관 조사	자치구 승인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기관	수행기관 조사	수행기관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동주민센터	연금공단 조사	구 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서울시 돌봄SOS서비스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동주민센터 방문조사	동주민센터 적격 판단	자치구 협약기관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조사	동주민센터 선정	자치구 협약기관

-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건의료 · 건강 · 요양 · 돌봄 · 주거 5대 분야 돌봄 서비스를 접수, 계획수립,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하도록 통합돌봄지원 체계 구축 · 운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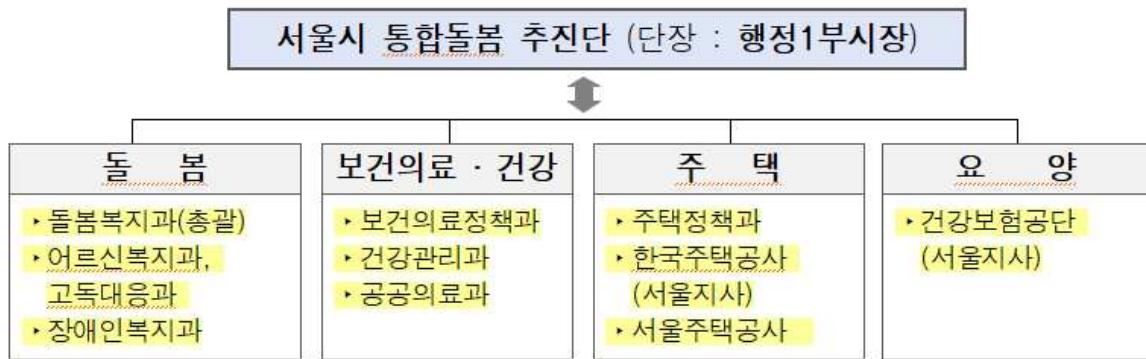
## [돌봄통합 추진체계]



- 병원(퇴원환자), SH · LH공사(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등 광역 단위 연계가 필요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운영 및 구성을 조례안에 명시함.
  - 다양한 분야의 민관 협력이 필요하므로 협의체의 구성시 15명 이내로 의원구성을 명시한 제 7조안은 인원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노인·의료·통합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시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음.

[서울시 통합돌봄 추진단 구성안]



마.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정(안 제12조~제14조)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합돌봄 서비스의 일원화를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및 현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안건을 발굴 협의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 25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치구 단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을 7개 자치구에서 실시 50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함.

[‘25년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내역]

연 번	자치구	조정 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운영비	사업비
	합 계	500	‣ 통합돌봄회의 운영 및 홍보 (137)	‣ 약 14개 사업 운영(363)
1	성동구	80	‣ 홍보물 제작, 회의 운영, 교육 등 (24)	‣ 균력저축 운동교실(40) ‣ 온기죽 영양지원(16)
2	광진구	80	‣ 교육 교재, 운영비, 홍보물품 등(11)	‣ 건강회복 방문케어(59) ‣ 퇴원환자 케어플랜(10)
3	은평구	80	‣ 통합돌봄회의 운영(9)	‣ 통합돌봄 주거 돌봄(14) ‣ 퇴원환자 맞춤 돌봄(57)
4	관악구	75	‣ 홍보비 및 통합돌봄회의 등(18)	‣ 다학제 방문진료(15) ‣ 구강·복약지도(14) ‣ 마음건강, 고위험집중(10) ‣ 케어매니저, 주거안전(18)
5	금천구	65	‣ 통합돌봄회의 운영·홍보 등(25)	‣ 방문구강건강관리(31) ‣ 퇴원환자 연계, 건강검진 등 (9)
6	서대문구	60	‣ 통합돌봄회의 운영,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 등(40)	‣ 퇴원환자 이동지원(20)
7	동대문구	60	‣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10)	※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50)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은 돌봄 통합지원 과정에서 의료·장기요양·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대량으로 취급되므로 현장에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정보 공유의 범위·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조례안에서 강조함

###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통합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됨.
- 이에 서울시 지역사회 내 분절된 돌봄·보건·의료·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돌봄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임.
-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제·개정 가이드라인의 필수사항이 포함되어 발의됨을 확인함.
- 다만 제7조 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다양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15명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추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원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돌봄통합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군·구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협력체계 구축에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 법 조 사 관 김진영	02-2180-8140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327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협의체의 구성 위원을 15명 내에서 구성 한다하였으나 다양한 민관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40명내에서 구성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협의체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에서 ‘40명’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의 제1항에서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제안)안 조문대비표>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 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 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정안과 같음)</u></p> <p>제1조(목적) <u>(제정안과 같음)</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b>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b>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li> <li>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li> <li>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li> <li>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p>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 · 간호 ·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li> <li>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li> <li>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li> <li>4. 퇴원자 · 퇴소자에 대한 지역 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li> <li>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li> </ol>	<p>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사업</p> <p>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p> <p>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p> <p>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통합지원 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li> </ul> <p>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p>	<p>제6조(통합지원 협의체)</p> <p>(<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심의 · 자문한다.</p> <p>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에 관한 사항</p> <p>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p> <p>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u>협의체는</u>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u></p>	<p>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u>협의체는</u>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u>합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합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②항 <u>(제정안과 같음)</u>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③항 <u>(제정안과 같음)</u>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④항 <u>(제정안과 같음)</u>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구성)제⑤항 <u>(제정안과 같음)</u>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b>제8조(위원의 임기)</b>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u>(제정안과 같음)</u></p>
<p><b>제9조(위원의 해촉 등)</b> 위원의 해촉 및 제척 · 기피 · 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9조(위원의 해촉 등) <u>(제정안과 같음)</u></p>
<p><b>제10조(위원장의 직무)</b>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u>(제정안과 같음)</u></p>
<p><b>제11조(협의체의 회의)</b>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p> <p>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p>	<p>제11조(협의체의 회의)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b>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참여 를 위한 홍보 활동</li> <li>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li> <li>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b>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b> 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 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 축할 수 있다.</p>	<p>제12조(교육 및 홍보) <u>(제정안과 같음)</u></p> <p>제13조(협력체계 구축) <u>(제정안과 같음)</u></p>

현 행(제정안)	수 정 안
<p>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p> <p>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u>(제정안과 같음)</u></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u>(제정안과 같음)</u></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의료 및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 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 및 지원사업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 · 기피 · 회피 등 그 밖에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시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